

가축분뇨 자원화 뉴스

홍보부

☒ 2012년 가축분뇨 전량 육상처리

- 농림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수립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 액비유통센터 지정 확대 등 추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현재 5개소에서 2011년까지 70개소로 늘어난다. 또 액비유통센터도 현재 59개소에서 2012년까지 140개소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하기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2011년까지 매년 50만톤 이상을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기간 내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하고, 해양배출을 2만톤 이상 투기하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연간 감축물량의 50%인 25만톤 이상을 육상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별도의 부지확보 없이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을 '08년부터 2~3개소 시범 실시하는 한편, 지원 또한 국고보조 50%, 융자 30%, 지방비 20%로 개선했다.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는 2011년까지 140개소를 설치하되, 이중 70개소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와 마

찬가지로 해양배출 물량이 2만톤 이상인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연간 감축목표 물량의 20%인 10만톤을 육상 처리하기로 했다. 지원은 개소당 2억원씩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로 지원하며,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지원은 해양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액비유통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조건하에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개별시설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기존시설 개보수는 해양배출 농가 중 처리시설 미설치 및 처리용량 부족 농가에 우선 설치하여 연간 해양배출 감축물량의 30%인 15만톤을 육상에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양질의 퇴·액비 생산, 수요처 확보 등을 위해 퇴·액비 유통조직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 및 홍보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축협 등 경종·축산 조직간 협약 체결을 50개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양돈협회가 추진하는 경종관련 단체와의 액비살포 조인식을 조속히 체결하는 한편, 액비이용수도작 경진대회도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 해양배출 500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퇴·액비 생산 등을 위해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 및 질소함유량, 두당 논 확보 면적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고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액비유통활성화 협의회, 개보수 비용 등 지원 필수

농림부, 액비유통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토론회 가져



농림부는 지난 7월 10일 액비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액비저장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전국의 액비유통센터 운영주체 대표와 임직원 및 시·도, 시·군관계자,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양돈농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청주교육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액비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실태 파악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 방안 등 가축분뇨처리 대책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여주액비유통센터 이원복 대표와 및 전남영광군청 장천수 계장의 액비유통센터, 지자체 가축분뇨처리 우수 사례 발표도 각각 이어졌다.

■ 액비유통센터 중심 지원 계획… 양질 액비 강조

특히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이뤄진 분임토의를 통해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각 지방지차단체 및 액비유통센터 운영주체 관계자들은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를 통해 액비유통센터가 개별 농가의 액비저장조까지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별 농가들의 관리 소홀과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액비저장조가 적지 않은데다 한번 쌓이기 시작한 저장조내 슬러지의 경우 제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액비저장조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액비유통센터에서 직접 관리토록 할 경우 이 같은 문제점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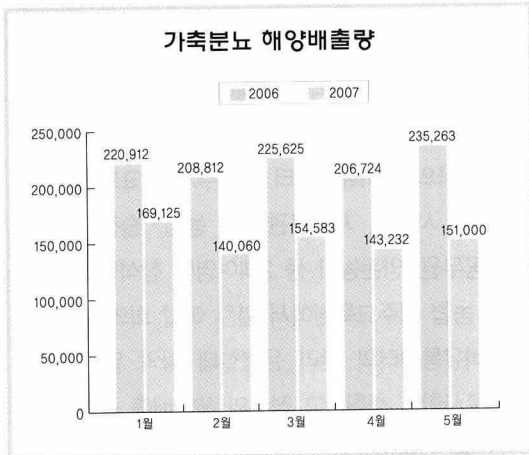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이상철 과장도 이날 종합토론을 통해 액비유통센터에 의한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액비저장조 지원을 액비유통센터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과장은 양질의 액비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해양당국의 해양배출 중단 방침을 여전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원화 의지가 결여된 지역이나 양돈농가의 경우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 분뇨 해양배출량을 목표 달성 가능

- 5월말 76만톤 전년비 31% 감소
- 자원화 의지에다 비용 상승 영향



올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5월 가축분뇨 해양 배출량은 17만7천여톤으로 전달 11만7천톤에 비해 51% 가량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5% 줄었다. 이에 따라 5월말 가축분뇨량은 75만8천여톤으로 일년전 109만7천톤 대비 31% 적었다.

이에 금년 가축분뇨 해양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목표치는 06년 260만톤보다 40만톤 가량 준 220만톤으로 금년 월평균 가축분뇨 배출량 15만여톤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말까지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해양 배출량이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자원순환농업 홍보 및 지원정책으로 분뇨 퇴·액비화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분뇨 해양 배출비용이 크게 오른 데다 내년 2월부터 분뇨 배출시 25개 항목에 대해 성분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비용 부담을 느낀 양돈

농가들이 자원화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농림부, 퇴액비 이용 규제 완화 방침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퇴·액비 이용 규제를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지난 7월 2일 분뇨 해양배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50만톤씩 해양배출량을 감축, 12년에는 해양배출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퇴액비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돼지 분뇨배출원 단위, 질소함유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액비 살포면적을 축소할 방침이다. 분뇨배출원 단위의 경우 두당 현행 8.6리터에서 5~6리터, 질소함유량 0.4%에서 0.25%, 논 확보 면적 640㎡에서 300㎡만㎡으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것을 액비처리방법별 시설 기준을 구분 적용토록 했다. 3%의 질소함유량에서 고농도 저농도로 세분하거나 질소함유량 최소량 하향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 양돈협, '가축분뇨 관리·이용법률' 제정안 의견 제출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에서 정부가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제정안이 퇴비와 액비의 기준을 '비료 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중의 퇴(액)비공정규격'으로

정할 경우 축산농가로서는 준수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은 판매용 제품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해 처리된 퇴(액)비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역시 악취 등 문제로 인해 혐기 발효액비는 현실에 맞지 않고 호기 발효 액비만 가능한 점을 감안해, 액비화시설은 고액 분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충분한 호기성 발효를 할 수 있도록 폭기 및 교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다만 기술적으로 최소 10일 이상 호기 발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는 저장시설에 대해 액비까지 포함, 최종 처분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퇴·액비 유통 협업체'에 민원의 이해당사자인 주민대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정안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7백50m/l로 규정한 기타지역의 총질소와 총인에 대한 기준은 삭제를 요구했다.

이는 정화처리농가의 총 질소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BOD를 낮추면 총질소는 자연적으로 감소, 법률에서 별도로 명문화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총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축산과학원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소장 이상진)은 가축분뇨 처리·이용과 관련한 기술정보를 산업현장에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 (<http://envi.nias.go.kr>)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축산과학원은 이 시스템에 대해 가축분뇨에 관한 기술정보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

도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를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퇴비 및 환경개선제 생산업체 정보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위주의 정보체계로서 양축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축산과학원 이상진 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농가 및 산업체와 함께 정보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자연순환농업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농림부, 일부 지자체 친환경사업 개선 '공문'

- 환경개선제 지원 대상 미생물제제로 한정

농림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에 이용되는 환경개선제(발효축진제)를 미생물제제로 한정,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6월 25일 농림부가 각 지자체로 보낸 '가축분뇨 자원화에 이용되는 환경개선제(발효축진제) 구매 관련 협조' 공문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액비의 악취 저감과 품질향상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제(발효축진제)를 보조·지원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개선제에 대한 개념을 미생물제제로 한정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어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미생물제제가 아닌 제품의 경우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미생물제제가 아닌 제품이라도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보냈다. **양동**